

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	------------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구 분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
	건축물 명칭		준공일	
	건축주	성 명	연 락 처	
		주 소		
	대 지 현 황	대지 지번		대지면적 m ²
	건축물 현 황	면 적	연면적 m ² , 건축면적 m ²	용 도
		층 수	지상 층, 지하 층	수용인원 명
		지하역사 명칭		기타 (설계·시공· 감리업체명 등)
지하도상가 명칭				

총괄 재난 관리자	선임된 사람	인 적 사 항	성 명		생년월일
			주 소 (전자우편 주소)		전화번호 (휴대전화)
			직 위		선임일
		자 격 사 항	자격수첩 번호 및 발급일	제 호, 년 월 일	자격구분
	경 력			선임기간	
	해임되거나 퇴직한 사람	성 명			생년월일
			주 소		
		해임일 또는 퇴직일	년 월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임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 사유	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: 건축사자격증 사본2.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경우: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,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.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,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: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.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: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p>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. 다만,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. 「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「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나목1)(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)·2)·3)에 해당하는 경우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,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